

의안번호	2217270
의 퇴 인	임종득 의원
회 답 일	2026.03.30.
추 계 번호	26G12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부문 조세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농업부문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7년 1조 2,222억원 등 2027년에서 2029년까지 총 2조 7,402억원(연평균 9,13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소득세 면제 등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할 경우, 법인·소득세는 2027년 368.4억원, 2028년 368.4억원 등 2027년에서 2028년까지 2년간 총 736.8억원(연평균 368.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소득세 면제 등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할 경우, 법인·소득세는 2027년 233.8억원 등 2027년에서 2028년까지 2년간 총 467.6억원(연평균 233.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농업 경영·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7년 81억원, 2028년 95억원 등 2년간 총 176억원(연평균 8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농·임·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할 경우,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자동차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는 2027년 1조 1,382억원 등 2027~2029년 3년간 총 2조 5,703억원(연평균 8,568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할 경우, 인지세는 2027년 74억원 등 2027년에서 2028년까지 총 148억원(연평균 7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등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7년 83억원, 2029년 88억원 등 2년간 총 170억원(연평균 8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7~2029년,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합계	-12,222	-13,588	-1,592	-27,402	-9,134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소득세 면제 적용기한 2년 연장 (안 제66조)	-368.4	-368.4	-	-736.8	-368.4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소득세 면제 적용기한 2년 연장 (안 제68조)	-233.8	-233.8	-	-467.6	-233.8
농업 경영·작업대행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안 제106조제1항제3호)	-81	-95	-	-176	-88
농임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감면 2년 연장(안 제106조의2제1항)	-11,382	-12,729	-1,592	-25,703	-8,568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의 적용기한 연장 (안 제116조)	-74	-74	-	-148	-74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안 제121조의23제10항)	-83	-88	-	-170	-85

주: 각 항목별 세수효과와 연평균은 세수효과가 발생하는 연도의 평균이며, 이들 연평균을 합산한 금액은
합계의 연평균과 일치하지 않음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소득세 면제 적용기한 2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28.12.31.	조세지출
2	안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소득세 면제 적용기한 2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28.12.31.	조세지출
3	안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대상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 단축 특례(8년 이상 → 3년 이상)의 적용기한 2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28.12.31.	조세지출
4	안 제106조제1항제3호(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농어업 경영 및 작업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2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28.12.31.	조세지출
5	안 제106조의2제1항(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의 적용기한 2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28.12.31.	조세지출
6	안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28.12.31.	조세지출
7	안 제121조의23제10항(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 농협중앙회 및 농협은행이 구조개편에 따라 설립된 법인 및 자회사에 제공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2년 연장 - 적용기한: (현행) 2026.12.31. → (개정안) 2028.12.31.	조세지출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
2	안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	—
3	안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에 대한 구분된 감면액 실적이 부재하여 추계가 어려움
4	안 제106조제1항 제3호(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 다만, 개정안의 내용 중 어업 경영 및 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부분은 관련 통계 미집계로 추계 제외
5	안 제106조의2제1항(농업·임업·어업용 및 연안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	—
6	안 제116조 (인지세의 면제)	○	—
7	안 제121조의23제10항(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가. (안 제66조)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소득세 면제 적용기한 2년 연장

□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관련 세수효과가 2027년부터 발생하여 추계기간은 2028년까지 기간으로 설정함

□ 조세지출예산서 상 최근 5년(2021~2025년)의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최근 5년(2021~2025년)간 법인·소득세 감면실적은 증감 추세가 일정하지 않음

- 최근 5년(2021~2025년) 소득세 및 법인세 연평균 감면실적: 368.4억원
- 2025년 12월 법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농지·초지 현물출자시 세제지원 방식이 전환되어 법인세수가 변동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현재 관련 정보의 부재로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하여 고려하지 않음

나. (안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소득세 면제 적용기한 2년 연장

-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관련 세수효과가 2027년부터 발생하여 추계기간은 2028년까지 기간으로 설정함
- 조세지출예산서 상 최근 5년(2021~2025년)의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가정
 -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최근 5년(2021~2025년)간 법인·소득세 감면실적은 증감 추세가 일정하지 않음
 - 최근 5년(2021~2025년) 소득세 및 법인세 연평균 감면실적: 233.8억원
 - 2025년 12월 법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농지·초지 현물출자시 세제지원 방식이 전환되어 법인세수가 변동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현재 관련 정보의 부재로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하여 고려하지 않음

다. (안 제106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관련 세수효과가 2027년부터 발생하여 추계기간은 2028년까지 기간으로 설정함
- 개정안의 내용 중 어업 경영 및 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부분은 소관 부처(해양수산부)에서 관련 통계를 집계하고 있지 않아 본 추계에서는 제외함
- 개정안에 따른 행태변화는 반영하지 않음

라. (안 제106조의2) 농·임·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감면

-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의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는 감면대상 석유류 공급량 추정치에 감면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추계

- 최근 휘발유·경유 등에 대해 유류세 인하가 적용되었던 점을 반영하여¹⁾, 추계에는 조세지출 실적 대신 면세유 공급량의 증감률 추세를 활용

[표 4]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 실적: 2019~2025년

(단위: 억원)

세목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전망)
교통·에너지·환경세	7,547	7,997	7,421	5,019	4,692	4,973	4,599
개별소비세	289	289	376	276	239	232	271
교육세	1,175	1,243	1,169	794	739	780	886
부가가치세	2,892	2,565	2,893	3,654	3,132	2,969	4,090
전체	11,903	12,094	11,859	9,743	8,802	8,954	9,846

자료: 기획재정부,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추계 자료가 발생 기준임을 감안해, 징수 기준으로 공제·환급액을 조정
 - 매년 징수 기간(부가가치세: 분기, 그 외 세목: 월)별로 공제·환급액이 동일한 것으로 전제

-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추계

마. (안 제116조) 인지세의 면제

- 개정안은 2026년 중 통과되어 2027년 작성분 문서부터 적용된다고 가정
-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의 적용기한 연장에 따른 세수효과는 최근 5년간 감면실적의 평균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추계

바. (안 제121조의23제10항)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관련 세수효과가 2027년부터 발생하여 추계기간은 2028년까지 기간으로 설정함

1) 최근 유류세 인하: ('18.11.6.~'19.5.6.) 15% 인하 → ('19.5.7.~8.31.) 7% 인하 → ('21.11.12.~'22.4.30.) 20% 인하 → ('22.5.1.~6.30.) 30% 인하 → ('22.7.1.~12.31.) 37% 인하 → ('23.1.1.~'24.6.30.) 경유 37%, 휘발유 25% 인하 → ('24.7.1.~10.31.) 경유 30%, 휘발유 20% 인하 → ('24.11.1.~'25.4.30.) 경유 23%, 휘발유 15% 인하 → ('25.5.1.~10.31.) 경유 15%, 휘발유 10% 인하 → ('25.11.1.~'26.3.26.) 경유 10%, 휘발유 7% 인하 → ('26.3.27.~5.31.) 경유 25%, 휘발유 15% 인하

- 개정안의 내용 중 어업 경영 및 어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관련 부분은 소관 부처(해양수산부)에서 관련 통계를 집계하고 있지 않아 본 추계에서는 제외함
- 개정안에 따른 행태변화는 반영하지 않음

3. 재정수반 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안 제66조)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소득세 면제 적용기한 2년 연장

□ (제도개요) 영농조합법인 등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한편, 법인에 출자한 농업인에 대하여 배당소득세 특례 및 이월과세 적용

- 영농조합법인이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전액 및 그 외 소득에 대한 일정 한도 내의 법인세 면제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에 대해 식량작물재배업 배당소득 전액 및 그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일정 한도 내의 소득세 면제
- 농업소득 등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세 면제, 면제된 금액을 제외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5%의 저율과세 적용
-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농지 또는 초지, 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 적용기한: (현행) 2026. 12. 31. → (개정안) 2028. 12. 31.

□ (감면실적) 조세지출예산서 상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소득세 면제 감면실적은 2021년 387억원, 2025년 전망액 384억원 수준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최근 5년(2021~2025년)간 법인·소득세 감면실적은 증감 추세가 일정하지 않음
 - － 2021~2023년 하락추세였으나, 2024년 및 2025년은 상승추세

[표 2]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실적: 2021~2025년(전망)

(단위: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p ¹⁾	연평균
전체 감면액	387	379	342	350	384	368.4
소득세	178	169	161	186	187	176.2
법인세	209	210	181	164	297	212.2

주: 1) 2025년 감면액은 전망치임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한편, 동 세액감면 실적은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936호를 근거로 하여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농지 및 초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 실적임을 감안할 필요

- (추계방법) 향후 법인·소득세 세수효과는 최근 실적의 연평균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추계하고, 농지·초지 현물출자시 세제지원 방식 변경으로 인한 개정법률 시행의 효과는 고려하지 않음
 - 법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농지·초지 현물출자시 세제지원 방식이 기존 양도소득세 감면 방식에서 이월과세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나, 이는 현물출자 실적 등의 부재로 고려하지 않음
 - 최근 5년(2021~2025년) 소득세 및 법인세 연평균 감면실적: 368.4억원

[표 3] 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분: 법인세 등, 2027~2028년

구분	2027	2028
영농조합법인 등의 법인·소득세 감면액	368.4	368.4

- (추계결과)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소득세 면제 등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할 경우, 법인·소득세는 2027년 368.4억원 등 2027년에서 2028년까지 2년간 총 736.8억원(연평균 368.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4]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 등, 2027~2028년

	(단위: 억원)			
	2027	2028	누적	연평균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적용기한 2년 연장(안 제66조)	-368.4	-368.4	-736.8	-368.4

나. (안 제68조)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소득세 면제 적용기한 2년 연장

- (제도개요) 농업회사법인 등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한편, 법인에 출자한 농업인에 대하여 배당소득세 특례 및 이월과세 적용
 - 농업회사법인이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전액에 대한 법인세 및 그 외 소득에 대한 일정 한도 내의 법인세 면제 등
 - 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에 농지 또는 초지, 작물재배업·축산업 및 임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에 대하여 식량작물재배업 소득 등에서 발생

- 한 배당소득세 면제, 그 외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 배제
- 적용기한: (현행) 2026. 12. 31. → (개정안) 2028. 12. 31.

- (감면실적) 조세지출예산서 상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소득세 면제 등의 감면실적은 2021년 193억원, 2025년 전망액 234억원 수준
 -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최근 5년(2021~2025년)간 법인·소득세 감면실적은 증감 추세가 일정하지 않음
 - 2021년 대비 2022년은 급격하게 상승하였으나 2024년까지 하락추세였으며, 2025년은 전년 대비 소폭 상승

[표 5]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실적: 2021~2025년(전망)

(단위: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p ¹⁾	연평균
전체 감면액	193	278	240	224	234	233.8
소득세	4	5	5	4	6	4.8
법인세	189	272	235	220	228	228.8

주: 1) 2025년 감면액은 전망치임

자료: 재정경제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한편, 동 세액감면 실적은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936호를 근거로 하여 농업인이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농지 및 초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 실적임을 감안할 필요
- (추계방법) 향후 법인·소득세 세수효과는 최근 실적의 연평균 수준으로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추계하고, 농지·초지 현물출자시 세제지원 방식 변경으로 인한 개정법률 시행의 효과는 고려하지 않음
 - 법 개정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농지·초지 현물출자시 세제지원 방식이 기존 양도소득세 감면 방식에서 이월과세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나, 이는 현물출자 실적 등의 부재로 고려하지 않음
 - 최근 5년(2021~2025년) 소득세 및 법인세 연평균 감면실적: 233.8억원

[표 6] 개정안에 따른 세수 감소분: 법인세 등, 2027~2028년

구분	2027	2028
농업회사법인 등의 법인·소득세 감면액	233.8	233.8

- (추계결과) 농업회사법인 등에 대한 법인·소득세 면제 등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할 경우, 법인·소득세는 2027년 233.8억원 등 2027년에서 2028년까지 2년간 총 467.6억원(연평균 224.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7]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 등, 2027~2028년

	2027	2028	누적	(단위: 억원) 연평균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소득세 면제 적용기한 2년 연장 (안 제68조)	-233.8	-233.8	-467.6	-233.8

다. (안 제106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 (제도개요) 농어업 경영 및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는 농어촌 인구 감소·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보완 및 농어업법인 경영개선 목적에서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농어업 경영 및 작업 대행용역 관련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임
 - (위탁영농)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농작물재배 대행, 축산물 사육 행을 하는 법인 활동 농작업의 100% 위탁²⁾
 - (농작물대행)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농작업의 일부(100% 미만)인 논 밭갈기, 작물심기, 농약뿌리기, 가지치기, 수확하기 등 작물재배 수반 활동³⁾
- 농업 경영·작업 대행용역 관련 농업법인 매출액은 2023년 2,094억원 수준이며 최근 3년간(2021~2023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연평균 증가율 17.5%)
 - 다만, 면제사업자인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어 동 제도와 관련한 조세지출 실적이 집계되고 있지는 않음

2)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법인조사 보고서」(2023년 기준), 2025.5

3) 농림축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법인조사 보고서」(2023년 기준), 2025.5

[표 10]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 관련 매출액 현황: 2021~2023년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연평균 증가율
위탁영농·농작물대행 매출액	1,518	2,000	2,094	17.5%

주: 1. 「농업법인조사」(농림축산식품부) 상 법인세 신고 자료가 있는 농업법인 중 매출액 신고를 하였거나 유급종사자 1인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추계방법)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농업 경영 및 작업 대행용역 관련 ‘매출액 × 부가가치율 × 부가가치세율(10%)’로 추계

-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매출액은 최근 3년 평균 증가율(17.5%)이 추계기간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전제
- 농업 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 관련 부가가치율은 농업 부문 최근 3년 평균 수준(20.31%)이 추계기간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전제
 - －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 상 ‘농업’[A01] 산업의 평균 부가가치율 수준 적용

[표 11] 농업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 관련 부가가치율: 2022~2024년

(단위: %)

구분	2022	2023	2024	연평균
농업	20.49	18.96	21.49	20.31

자료: 한국은행, 「2024년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농업 경영 및 농업 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2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7년 81억원 등 2027~2028년 2년간 총 176억원(연평균 88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2027~2030년 국세인 부가가치세(74.7%)는 총 132억원(연평균 66억원), 지방소비세(25.3%)는 총 45억원(연평균 22억원) 감소 예상됨

[표 12] 농업 경영·작업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세수효과: 2027~2028년
(단위: 억원)

	2027	2028	누적	연평균
농업 경영·작업대행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안 제106조제1항제3호)	-81	-95	-176	-88
- 부가가치세(74.7%)	-60	-71	-132	-66
- 지방소비세(25.3%)	-20	-24	-45	-22

라. (안 제106조의2) 농·임·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감면

(1) 추계방법

- 농·임·어업용 면세유 공급량은 유종별로 2020~2025년 실적에 대한 연평균 증감률을 반영하여 추정

[표 14] 농·임·어업용 면세유 공급량 실적: 2020~2025년

(단위: 천kl, %)

유종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증감률
휘발유	202	201	194	189	191	190	-1.2
경유	1,855	1,767	1,667	1,663	1,626	1,621	-2.7
중유	43	38	34	21	21	23	-11.7
윤활유	8	8	7	7	7	7	-3.4
LPG	15	17	19	18	19	21	7.6
등유	443	440	423	350	341	365	-3.8
합계	2,567	2,472	2,344	2,248	2,205	2,228	-2.8

주: 중유 공급량은 부생유 2호(개별소비세율 동일)를 포함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간접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자동차세(주행분), 부가가치세로 구분하여 추계하고 합산

- 추계기간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에 대한 유류세 감면은 없는 것으로 전제

[표 15] 현행 유종별 세율

유종	교통·에너지·환경세 (A)	개별소비세 (B)	교육세 (C)	자동차세(주행분) (D)	부가가치세 (E)
휘발유	529원/L ¹⁾	—	A×15%	A×26%	(세전가격 +세세부담금 +품질검사수수료 ³⁾ ×10%
경유	375원/L ¹⁾	—	B×15%	—	
등유	—	63원/L ¹⁾		—	
중유	—	17원/L		—	
윤활유	—	— ²⁾	—	—	
LPG	—	14원/kg ¹⁾	—	—	

주: 1) 경유와 휘발유의 기본세율은 각각 340원/L, 475원/L 이지만 탄력세율 375원/L, 529원/L를 반영하고, 등유의 기본세율은 90원/L 이지만 탄력세율 63원/L를 반영하며, LPG의 기본세율은 20원/kg이지만, 탄력세율 원/L를 반영함

2) 윤활유의 경우 별도의 개별소비세는 없으며 부가가치세만 해당

3) 품질검사수수료는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에 명시되어 있으며 석유제품은 0.469원/L

□ 부가가치세 추계 시, 농·임·어업용 석유류의 세전가격은 최근 평균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하여 반영

○ 석유류의 유종별 세전가격은 등락을 반복함에 따라 일정한 추세를 예측하기 어려워⁴⁾ 최근 실적인 2020~2025년 연평균 금액을 적용

[표 16] 유종별 세전가격 현황: 2020~2025년

(단위: 원/L)

유종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휘발유	397	638	980	837	816	763	739
경유	432	655	1186	951	900	866	832
중유	451	606	895	786	816	772	721
LPG	588	803	1119	947	971	990	903
등유	411	599	1022	917	870	841	777

자료: 한국석유공사 펌트로넷(www.petronet.co.kr)

(2) 추계결과

(가)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 농·임·어업용 석유류의 공급량은 2025년 유종별 실적에 최근 연평균 증가율(2020~2025년, 비용추계 전제 참고)을 반영하여 추정

4) 두바이유 가격(달러/배럴): ('18년) 69.66 ('19년) 63.53 ('20년) 42.29 ('21년) 69.41 ('22년) 96.41 ('23년) 82.10 ('24년) 79.58 ('25년) 69.36 ('26년3.1~26.) 129.41

[표 17] 농·임·어업용 석유류의 유종별 공급량 추정: 2026~2028년

(단위: 천kl)

유종	2026	2027	2028
휘발유	188	185	183
경유	1,578	1,536	1,495
중유	21	18	16
윤활유	7	7	6
LPG	23	25	27
등유	352	338	326

□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는 유종별 공급량 추정치에 각각의 세율 적용하여 추계

- 교통·에너지·환경세액 = 휘발유 및 경유 공급량 추정치
 $\times$ 세율(휘발유 529원/L, 경유 375원/L) $\times$ 조정계수*
- 개별소비세액 = 등유, 중유, LPG 사용량 추계
 $\times$ 세율(등유 63원/L, 중유 17원/L, LPG 14원/kg) $\times$ 조정계수*

* 면세유 공급 시점과 감면액 발생 시점 간 차이 등을 보정하기 위해,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조정계수를 산출해 반영(2020년 기준, 교통·에너지·환경세 0.996, 개별소비세 1.002)

[표 18] 농·임·어업용 석유류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감면액 추계(귀속): 2027~2028년
(단위: 억원)

	2027	2028
교통·에너지·환경세	6,715	6,550
개별소비세	220	212

(나) 교육세 및 자동차세

□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교육세와 자동차세(주행분)은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의 부가세(Surtax)이므로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개별소비세 추계액에 세율을 곱하여 추계

- 교육세액 = (교통·에너지·환경세 추계액 + 개별소비세 추계액) $\times$ 15%
- 자동차세액(주행분) = 교통·에너지·환경세 추계액 $\times$ 26%

[표 19] 농·임·어업용 석유류 교육세와 자동차세(주행분) 감면액 추계(귀속): 2027~2028년
(단위: 억원)

	2027	2028
교육세	1,040	1,014
자동차세(주행분)	1,746	1,703

(다) 부가가치세

□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추계

- 부가가치세액 = 유종별 공급가액 추정액⁵⁾ × 10% × 조정계수*
 - 휘발유, 경유 공급가액 = (세전가격+교통·에너지·환경세+교육세+자동차세 주행분+품질검사수수료)×유종별 사용량 추계
 - 등유, 중유 공급가액 = (세전가격+개별소비세+교육세+품질검사수수료)×유종별 사용량 추계
 - LPG(프로판) 공급가액 = (세전가격+개별소비세+품질검사수수료)×사용량 추계

* 실제 부가가치세 감면액과 추계액 간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조정계수(2020년 기준, 1.22) 적용

[표 20] 농·임·어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감면액 추계(귀속): 2027~2028년
(단위: 억원)

	2027	2028
부가가치세	3,294	3,208

(라) 추계 결과

-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6년 말에서 2028년 말로 2년 연장할 경우, 세수효과는 2027년 1조 1,382억원 등 2027~2029년 3년간 총 2조 5,703억원(연평균 8,568억원) 감소 예상
 - 추계에 활용한 석유류 공급량이 간접세 신고 기준 자료임을 감안해 징수 기준으로 추계액을 조정
 -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는 매월 공급량에 대한 석유 판매업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달 공제 및 환급되므로 당해연도 11/12, 차년도에

5) 윤활유의 세전가격은 별도 집계되고 있지 않아, 과거 부가가치세 감면액 실적치와 추계치 간 비율(조정계수)을 활용해 해당 금액을 추계액에 반영

1/12 공제 및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

- 부가가치세의 경우 일반과세자의 신고 및 납부가 분기별로 이루어지므로 당해연도 3/4, 차년도에 1/4 공제 및 환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가정

[표 21]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시 세수효과(징수): 2027~2029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	교통·에너지·환경세	-6,155	-6,564	-546	-13,265	-4,422
-	개별소비세	-202	-213	-18	-432	-144
-	교육세	-954	-1,016	-85	-2,055	-685
-	자동차세(지방세)	-1,600	-1,707	-142	-3,449	-1,150
-	부가 가치세					
	국세(74.7%)	-1,845	-2,413	-599	-4,857	-1,619
	지방소비세 (25.3%)	-625	-817	-203	-1,645	-548
전체		-11,382	-12,729	-1,592	-25,703	-8,568

마. (안 제116조) 인지세의 면제

- (제도개요) 농어민 소득 기반 유지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대출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대비용 경감을 위해 다음과 같은 문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표 22] 개정안의 인지세 면제 대상 문서

구분	수혜자	인지세 면제 대상문서	비고
제5호	농협, 수협, 신협 등 조합원	해당 조합으로부터 용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	용자한도 1억원
제6호	농협, 수협, 신협 등 조합원	해당 조합이 작성하는 조합원 명의의 예금·적금증서·통장	어린이예금통장 포함
제7호	-	농어촌정비사업 등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제9호	-	농협에서 취급하는 농촌주택개량자금 융자 및 건축자금 외상구입 관련 서류	
제11호	-	농지조성사업 관련 서류	

- (추계방법)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실적은 연도별로 증감을 반복하여 뚜렷한 추세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최근 5년간의 연평균 감면실적이 향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계

- 최근 5년(2020~2024년)간 연평균 감면실적: 74억원

[표 23]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실적: 2020~2024년

(단위: 억원)

	2020	2021	2022	2023	2024
인지세	92	116	46	24	92

자료: 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년도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할 경우, 인지세는 2027년 74억원 등 2027년에서 2028년까지 총 148억원(연평균 74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표 24]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7~2028년, 인지세

(단위: 억원)

구 분	2027	2028	누적	연평균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의 적용기한 연장 (안 제116조)	-74	-74	-148	-74

바. (안 제121조의23제10항)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도개요)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는 동 조합중앙회 구조 조정* 과정에서 설립된 법인 등의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제도
 - 기존 농협중앙회는 금융, 농업경제, 축산경제, 교육지원 등 4개 분야가 한 조직 내에 공존하였으나, 2012년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용사업을 경제사업과 분리(「농업협동조합법」 '11년 3월 개정 및 '12년 3월 시행)⁶⁾
 - 농협중앙회가 계열사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제도는 2012년 시행되었으며, 2017년부터 농협은행이 계열사에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해서까지 면세범위가 확대되어 시행

6)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2021, 『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15) 농협·수협중앙회에 대한 과세특례』), 국회예산정책처(2020, 『농협 경제사업활성화 평가』)

- (감면실적) 농협중앙회 및 농협은행이 자회사 등에 제공한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실적은 2020년 56억원에서 2024년 70억원으로 증가 추세(연평균 5.7%)

[표 13]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실적: 2020~2024년

(단위: 억원, %)

	2020	2021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감률
조세지출실적	56	57	59	69	70	5.7

자료: 재정경제부

- (추계방법) 농협 구조개편 일환으로 설립된 법인 및 자회사에 제공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연장에 따른 향후 세수효과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조세지출 연평균 증감률(5.7%)을 적용하여 추계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을 2년 연장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7년 83억원 등 2027~2028년간 총 170억원(연평균 8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4]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 세수효과: 2027~2028년

(단위: 억원)

	2027	2028	누적	연평균
농협 전산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연장(안 제121조의23제10항)	-83	-88	-170	-85
- 부가가치세(74.7%)	-62	-65	-127	-64
- 지방소비세(25.3%)	-21	-22	-43	-22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이정훈	박연서
	박성은	
	김효경	
세제분석2과	김주현	백경엽
	이유섭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정훈	02-6788-4669	nororand@assembly.go.kr
박성은	02-6788-4668	ixsepark@assembly.go.kr
김효경	02-6788-4647	hkkim@assembly.go.kr
김주현	02-6788-4836	kjh@assembly.go.kr
이유섭	02-6788-4838	useuplee@assembly.go.kr